##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55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권영진·권영세·서범수

인요한 · 엄태영 · 조지연

윤영석·박해철·박충권

민홍철 · 한준호 · 손명수

복기왕 • 이만희 • 김희정

염태영 • 이소영 • 김미애

김은혜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(국민, 영구, 행복주택, 통합공공임대)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,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.

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.1조원에 달하여 2024.6월 말 48.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,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.

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 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##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중 "50조원"을 "65조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본금) 공사의 자본금은 <u>50</u>	제4조(자본금)
<u>조원</u> 으로 하고, 그 전액을 정부가	65조원
출자한다.	<b>.</b>